의안번호	2209022
의 뢰 인	서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6.
추계번호	25F161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–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43.6억원, 2031년 411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1년까지 6년간 총 3,135.5억원(연평균 522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등 세수는 2026~2030년간 총 118.0억원(연평균 23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수는 2026~2030년간 총 1,040.0억원(연평균 208.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등 세수는 2026~2030년간 총 46.0억원(연평균 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는 2027~2031년간 총 1,931.5억원(연평균 386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	−26.4	−24.4	−23.4	−22.4	−21.4	−	−118.0	−23.6
농어업인 융자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−208.0	−208.0	−208.0	−208.0	−208.0	−	−1,040.0	−208.0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15조제1항)	−9.2	−9.2	−9.2	−9.2	−9.2	−	−46.0	−9.2
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67조)	−	−362.0	−373.8	−385.9	−398.4	−411.4	−1,931.5	−386.3
합 계	−243.6	−603.6	−614.4	−625.5	−637.0	−411.4	−3,135.5	−522.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○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9조제2항)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 ○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9조제3항)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2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융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3	안 제15조 제1항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4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)	○	
3	안 제15조 제1항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가.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❑ 개정안에 따른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
○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

-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만큼 감소한다고 가정
- 재산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○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액

-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0.3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0.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나.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❑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
○ 향후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5조제1항)

❑ 개정안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
○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다고 가정하고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(취득세) 향후 5년(2026~2030년)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다고 가정[1)]
- (재산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향후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
라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67조)

❑ 개정안에 따른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○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세율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
- 조합법인의 실적은 조세지출예산서상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※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

  ※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은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에 10% 수준으로 가정

- 2023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○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1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향후 5년간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 없음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자료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(1) 소형어선 지방세 감면(안 제9조제2항)

(가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

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취득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31억원, 2023년 22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−8.5%)

○ 재산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7억원, 2023년 8억원으로 연평균 8억원으로 나타남

○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1억원, 2023년 1억원으로 연평균 1억원으로 나타남

[표 2] 최근 5년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감율/연평균액
취득세	31	30	27	27	22	−8.5%
재산세	7	8	8	8	8	8
지역자원시설세	1	1	1	1	1	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, 각 년도

(나) 추계방법 및 결과

❑ 향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억원, 2030년 2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5억원(연평균 2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감소추세(연평균 −8.5%)를

반영하여 추계

○ 재산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감소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17	15	14	13	12	70	14
재산세 감소액	8	8	8	8	8	40	8
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	1	1	1	1	1	5	1
합 계	26	24	23	22	21	115	23

(2)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지방세 감면(안 제9조제3항)

(가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

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·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취득세에 대한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은 2021년 0.2억원, 2023년 0.2억원으로 연평균 0.3억원으로 나타남

○ 등록면허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0.1억원, 2023년 0.1억원으로 연평균 0.1억원으로 나타남

[표 4] 최근 5년간 어업권·양식업권의 지방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취득세	0	0	0.2	0.6	0.2	0.3
등록면허세	0.1	0.1	0.1	0.1	0.1	0.1

주: 취득세 연평균액은 2019년 및 2020년 취득세 감면실적이 없는 관계로 최근 3년간(2021~2023년)의 연평균액임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, 각 년도

(나) 추계방법 및 결과

❑ 향후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0.4억원, 2030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.0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취득세는 최근 3년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0.3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0.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향후 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감소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0.3	0.3	0.3	0.3	0.3	1.5	0.3
등록면허세 감소액	0.1	0.1	0.1	0.1	0.1	0.5	0.1
합 계	0.4	0.4	0.4	0.4	0.4	2.0	0.4

(3) 추계결과

❑ 향후 자영어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.4억원, 2030년 23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8.0억원(연평균 23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자영어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취득세 등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소형어선의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(안 제9조제2항)	−26	−24	−23	−22	−21	−115	−23
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9조제3항)	−0.4	−0.4	−0.4	−0.4	−0.4	-2.0	−0.4
합 계	−26.4	−24.4	−23.4	−22.4	−21.4	−118.0	−23.6

나.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융자담보물에 대한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
- ○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- 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236억원에서 2023년 130억원으로 연평균 208억원으로 나타남

[표 7]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액
감면실적	236	252	260	163	130	20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❑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08억원, 2030년 208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040억원(연평균 2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농어업인 융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8]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등록면허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융자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−208	−208	−208	−208	−208	−1,040	−208

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5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○ 감면율: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감면

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9년 22.0억원, 2023년 9.2억원 등 5년간 총 62.1억원(연평균 12.4억원)으로 나타남

○ (취득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15.3억원, 2023년 0억원 등 5년간 총 18.5억원(연평균 3.7억원)으로 나타남

○ (재산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9년 6.7억원, 2023년 9.2억원 등 5년간 총 43.6억원(연평균 8.7억원)으로 나타남

[표 9]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
감면실적	22.0	10.4	10.8	9.7	9.2	62.1	12.4
- 취득세	15.3[1)]	1.5	1.6	0.1	0	18.5	3.7
- 재산세	6.7	8.8	9.2	9.7	9.2	43.6	8.7

주: 1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비축기지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감면실적으로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해당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자주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재산세는 2026년 9.2억원, 2030년 9.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6.0억원(연평균 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(취득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며,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
○ (재산세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추가 취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 변동소요도 크지 않으므로, 2023년 감면실적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5조제1항)	-9.2	-9.2	-9.2	-9.2	-9.2	-46.0	-9.2

라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67조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○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

[표 11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일반법인</th><th>조합법인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적용대상</td><td>일반법인</td><td>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과세표준</td><td>당기순이익
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
+손금불산입
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
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
= 과세표준</td><td>당기순이익
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항목[1])
= 과세표준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과표 구간별 세율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0.9%[2]</td><td rowspan="2">0.9%</td></tr>
<tr><td>2~20억원</td><td rowspan="2">1.9%[2]</td></tr>
<tr><td>20~200억원</td><td rowspan="3">1.2%</td></tr>
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2.1%[2]</td></tr>
<tr><td>3,000억원 초과</td><td>2.4%[2]</td></tr>
</table>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0.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❑ (특례실적)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2020년 327.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.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28.9억원 수준

○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에 10%를 적용하여 산정

○ 2024년 특례실적 감소는 법인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12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3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−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[1]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−	605.3	−	1,116.7	−511.3
2억원 이하	1,181	618	0.9	5.6	1.0	6.2	−0.6
2~20억원	2,273	19,307		174.0	2.0	340.7	−166.6
20~200억원	753	37,307	1.2	403.2		731.1	−327.9
200~3,000억원	8	1,913		22.5	2.2	38.7	−16.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
–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14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×D, 억원)	전체 (F=E×B, 억원)		1인당 (E'=C×D', 억원)	전체 (F'=E'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–	–	–	1,116.7	–	–	1,057.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.0	0.01	6.2	0.9	0.004	5.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.0	0.2	340.7	1.9	0.2	321.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.1	731.1		1.0	693.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.2	5.5	38.7	2.1	5.2	36.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15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−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−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−D)	
산출세액	605.3	1,116.7	−511.3	1,057.7	−452.4	−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16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	–
	조정후 (A×[1−11.5%])	289.4	296.1	374.3	452.4	328.9[1)]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17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세수효과	−362.0	−373.8	−385.9	−398.4	−411.4

(3) 추계결과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소득세는 2027년 362.0억원, 2031년 411.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,931.5억원(연평균 386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67조)	−362.0	−373.8	−385.9	−398.4	−411.4	−1,931.5	−386.3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